

강의 우수교원 포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업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에 의거, ‘강의 우수 교원 포상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2.11. 개정)

제2조(적용범위) 당해 학년도 개설된 강좌를 담당한 교원(전임, 비전임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매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의 수업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상위 10% 강좌의 담당 교수를 선정하여 포상하도록 한다. 단, 수업평가 결과가 75점 이하 과목이 있는 교원과 책임수업시수가 부족한 전임교원은 우수 교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11.10.개정),(2018.8.24.개정)

② 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전공별 해당학년 재학생원의 80% 이상이 수강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양 수업의 경우 전체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교과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020.2.25.개정), 단, 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60%이상이어야 한다. (2023.03.15.개정)

③ 수업평가 결과는 해당 교과목의 백분위 점수로 산정한다.

제4조(포상) ① 우수 교원 포상은 수업 평가 상위 10% 강좌의 담당 교수에게 포상하며, 학기별 우수 교원을 선정하여 매 학기말에 포상한다. 단, 수업평가 결과가 75점 이하 과목이 있는 교원과 책임수업시수가 부족한 전임교원은 우수 교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11.10.개정),(2018.8.24.개정),(2019.8.28.개정)

② 포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2017.4.21.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1-14 우수교원 포상 규정

[별표 1] 포상금액 지급기준 (2017.4.21.신설)

구 분		포상 내용	비 고
수업평가 우수교원 포상	전 임	최대 50만원	대상자의 수에 따라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비전임	최대 30만원	